

의안번호	제 937 호
의결	년 월 일
연월일	(제 회)

충청북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의회운영위원장
제안연월일	2021년 12월 15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37
----------	-----

제안연월일 : 2021년 12월 15일
제안자 :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제2015-400호) 개정 권고 사항으로 의원의 수의 계약체결 제한사항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사항 강화, 위반여부 점검 등(안 제4조의5)
 - 충청북도지사 또는 충청북도교육감이 요구시 성실하게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신고
 - 의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서식 추가
 -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연 1회 이상 안내 및 위반여부 연 1회 이상 점검

3. 조례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붙임
- 조례안예고 : 해당없음
- 관련부서협의 : 해당없음
- 비용추계 : 해당없음

충청북도의회 조례 제 호

충청북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5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충청북도지사 또는 충청북도교육감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의원은 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연 1회 이상 안내하고, 위반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8호서식] (제4조의5제4항 관련)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변경) 신고서									
성 명					생년월일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		총 명							
		본인 관련자 명				본인, 직계존·비속 명			
		배우자 관련자 명		유 무		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			
연 번	관계	성 명	생년월일	사업자명 (상호, 법인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지분율	기타
1									
2									
3									
4									
5									
6									
7									
8									
9									
10									
※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 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각 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충청북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4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충청북도의회의원					(인)				
충청북도의회의장 귀하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배우자
2.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4.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과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
나.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으로서 소유 명의와 관계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6.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1호·제3호·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과 제2호·제4호·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 및 계약체결의 금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3조의2(자료 제출 요구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 33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자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지방의회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